



제 434회 국회 (임시회)
제2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공급망 위험 대응을 위한 필수농자재등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필수농자재 구입 비용 보조금 지원 근거 마련 >
■ 정희용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7622호)

2026. 4.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이정은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2
1. 필수농자재 구입 비용 보조금 지원 근거 마련(안 제7조제6항 신설)	2

I. 제안경위

가. 제 안 자 : 정희용의원 등 10인

나. 제 안 일 : 2026. 3. 19.

다. 회 부 일 : 2026. 3. 20.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하여금 농업경영체에 대하여 필수농자재 및 농업용에너지의 가격상승분 지원과 필수농자재의 구입비용을 융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국제 원자재 가격 변동, 환율 상승 및 공급망 교란 등으로 비료·사료 등 필수농자재 가격이 상승하면서 농업경영체의 부담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이로 인해 농업 생산 안정성 저하와 농가 소득 감소로 이어질 우려가 증대되고 있지만, 현재 시행 중인 필수농자재 구입비용 융자 사업만으로는 농업경영 안정에 필요한 지원이 충분하지 않다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이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농업경영체의 경영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필수농자재 구입에 필요한 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하여 농업경영체의 지속가능한 생산활동 보장과 경영안정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7조제6항 신설).

Ⅲ. 검토의견

1. 필수농자재 구입 비용 보조금 지원 근거 마련(안 제7조제6항 신설)

’26. 12. 시행 예정인 「공급망 위험 대응을 위한 필수농자재등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필수농자재법」”이라 한다) 제7조제5항은 필수농자재의 가격상승으로 인하여 필수농자재 구입에 어려움을 겪는 농업경영체의 필수농자재 구입비용에 대하여 농식품부장관 등이 ‘융자’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개정안은 기존 ‘융자’ 뿐만 아니라, 필수농자재 구입에 필요한 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신설하려는 것임.

현행	개정안
법률 제21201호 공급망 위험 대응을 위한 필수농자재등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필수농자재등 지원)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급망 위험으로 인하여 필수농자재등의 가격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준 이상으로 상승하는 경우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가격의 범위에서 농업경영체(「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경영체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필수농자재등 가격상승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가격 중 필수농자재 가격의 범위를 정할 때에는 「공인회계사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회계법인을 통하여 필수농자재 제조·판매업자가 산정한 제품 가격의 적정성을 검증하도록 할 수 있으며, 그 검증 결과를 고려하여 필수농자재 가격의 범위를 정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지원기준, 지원절차 및 품목별·경영규모별 지원상한액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 경우 지원기준을	법률 제21201호 공급망 위험 대응을 위한 필수농자재등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필수농자재등 지원) ① ~ ⑤ (현행과 같음)

현행	개정안
정할 때에는 공급망 위험에 따른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인한 필수농자재등의 가격상승률 및 농가구입가격지수(국가데이터처장이 공표하는 농업경영체의 경영활동에 투입된 품목의 가격 지수를 말한다) 상승률을 고려하여야 한다.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필수농자재 제조·판매업자의 제품(농업경영체가 필수농자재 판매업자로부터 구입하여 사용하는 물품 중 제2조제4호에 해당하는 물품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제품에 대하여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5년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지원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시장지배적사업자로서 같은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남용행위로 필수농자재 가격을 부당하게 인상하여 같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조치 명령을 받은 경우: 시정조치 명령의 대상이 된 제품 2.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0조제1항에 따른 부당한 공동행위로 필수농자재 가격을 부당하게 인상하여 같은 법 제42조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조치 명령을 받은 경우: 시정조치 명령의 대상이 된 제품 3. 필수농자재 제조·판매업자가 산정한 필수농자재 가격이 제1항에 따른 가격의 범위를 초과하는 경우: 해당 제품 4. 제1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필수농자재 제조·판매업자가 제품별 제조·판매가격 산정 근거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해당 제조·판매업자가 제조·판매하는 모든 제품 ⑤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필수농자재의 가격상승으로 인하여 필수농자재 구입에 어려움을 겪는 농업경영체에 대하여 필수농자재 구입비용을 융자할 수 있다. <u><신 설></u>	⑥ <u>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농업경영체의 경영비 부담완화를 위하여 필수농자재 구입에 필요한 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u>

필수농자재 가격 및 농업에너지비용이 국내외 경제·통상·정치·외교적 상황의 변화, 기후변화로 인한 자연재해의 빈발 등으로 급격한 변동을 보이면서 농업경영체의 경영비 부담이 심화되고 있음.

이러한 경영비 부담 증가는 개별 농업경영체의 노력만으로 대응하기 어려운 구조적 문제로서, 필수농자재등의 가격 변동에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필요한 경우 재정적 지원을 통해 농업경영체의 부담을 완화할 필요성이 인정된다 할 것임.

이에 공급망 위험에 따른 필수농자재등의 가격상승으로 인한 농업경영체의 경영비 부담을 완화함으로써 농업경영체의 지속가능한 생산활동 보장과 경영안정에 기여하기 위하여 「필수농자재법」이 제정('25. 12.)되어 '26. 12. 시행을 앞두고 있음.

동법 제7조제5항은 필수농자재의 가격상승으로 인하여 필수농자재 구입에 어려움을 겪는 농업경영체의 필수농자재 구입비용에 대하여 농식품부장관 등이 ‘융자’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중동전쟁 등 지정학적 리스크발 원자재 가격 변동, 고환율 및 공급망 불안이 지속됨에 따라 현행 융자 위주의 지원책만으로는 실질적인 농업 경영 안정화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개정안은 기존 융자에 추가로 ‘필수농자재 구입에 필요한 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려는 것으로,

재난의 규모와 농가의 경제력이 각각 상이한 만큼, 기존의 획일적인
용자 지원을 넘어 보조를 병립시킴으로써 위기 상황과 농가 여건에
따라 ‘용자’와 ‘보조’를 탄력적으로 선별하여 운영할 수 있는 정교한
정책 수단을 확보한다는 점에서 개정안은 필요한 입법 조치로 판단됨.

다만, 개정안과 관련하여 다음 사항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첫째, 타 법률과의 중복 여부임.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농어업경영체법」”이라 한다) 제11조의2에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주요 원자재의 공급망 위협 등에 따라 경
영상 부담이 급증한 농어업경영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
한 지원을 할 수 있다”고 이미 규정하고 있으므로, 중복 입법 여부
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그러나, 「농어업경영체법」에 명시된 “필요한 지원”이라는 용어
는 국가의 포괄적인 책무를 선언한 것에 가까워 그 범위가 넓고 구
체적인 지원 방식이 모호하므로, 실제 가격이 급등한 현장에서 막대
한 예산이 수반되는 직접적인 자금 투입으로 즉각 이어지기에는 행
정적·재정적 한계가 존재할 우려가 있을 것으로 판단됨.

반면, 개정안은 지원의 대상을 ‘필수농자재 구입비용’으로 한정하
고, 구제 수단 역시 ‘보조’로 명확히 특정하고 있으므로, 위기 시 정
부가 직접적으로 보조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보다 구체화하고 명
확화한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는 것으로 보임.

둘째, 개정안에 따른 보조금 지급 근거 신설 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부담이 가중될 우려가 있다는 점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개정안은 필수농자재에 대한 직접적인 재정 지원인 ‘보조’ 방식을 신설하고 있는데, 비료 및 사료 등의 필수농자재는 사실상 대다수의 농업경영체가 영농 활동을 위해 상시적·반복적으로 대량 소비하는 핵심 소모성 품목임.

또한, 기존의 ‘융자’ 방식은 원금 상환을 전제로 하므로, 재정의 회수 및 순환이 상당 부분 가능한 반면, ‘보조’ 방식의 경우 상환 의무가 없는 ‘직접적인 자금 지원’이므로, 융자 지원 대비 소요예산이 큰 폭으로 증가할 소지가 있을 것으로 판단됨.

특히, 최근 국세 수입 감소¹⁾ 등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전반적인 재정 여건이 엄중한 상황에서, 인프라 구축 등 구조적 투자가 아닌 소모성 경영비에 대한 직접 보조는 중장기적으로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건전성에 부담으로 작용할 소지가 있는 것으로 보임.

따라서, 공급망 위기 상황에서 농가의 경영 안정을 위한 보조금 지급의 정책적 필요성은 인정되나, 상당한 재정 소요가 수반된다는 점을 감안할 때, 무분별한 재정 지출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안전장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1) 「3년 연속 ‘세수 핑크’… 작년 본예산보다 8.5조 덜 견혀」(동아일보, '26.2.11.)

- 지난해 국세 수입이 정부가 추가경정예산(추경)에서 수정한 목표치보다 1조8000억원 더 견혔다. 수치상으로는 좋아진 것 같지만, 당초 본예산 때 예상한 세수보다는 8조5000억원 덜 견혀 결과적으로는 사실상 3년 연속 ‘세수 핑크’가 발생했다.(이하 생략)

셋째, 「필수농자재법」 제정 취지 및 법 체계 정합성 측면 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필수농자재법」은 공급망 위험에 따른 필수농자재등의 가격상승으로 인한 농업경영체의 경영비 부담을 완화하여 농업경영체의 지속가능한 생산활동 보장과 경영안정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고,

동법 제7조제1항은 농식품부장관 등이 공급망 위험으로 인하여 필수농자재 등의 가격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준 이상으로 상승하는 경우 농업경영체에 필수농자재 등의 가격상승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5항에서는 농식품부장관 등이 필수농자재의 가격상승으로 인하여 필수농자재 구입에 어려움을 겪는 농업경영체에 대하여 필수농자재 구입비용을 융자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이와 같이 동법의 목적이 공급망 위험에 따른 필수농자재등의 가격상승으로 인한 농업경영체의 경영비 부담 완화라는 것과, 동법에 따른 지원의 전제조건이 필수농자재의 가격상승으로 인하여 필수농자재 구입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라는 점을 고려할 때,

안 제7조제6항의 경우 필수농자재의 가격 상승 여부 등 지원의 전제조건과는 관계 없이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농업경영체의 경영비 부담완화를 위하여 필수농자재 구입에 필요한 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고 규정

하여 지원대상 및 지원요건을 확대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측면이 동법의 목적 및 체계와 부합하는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보임.

따라서, 동법의 제정 취지, 법 체계 정합성 및 유사 입법례를 고려할 때, 안 제7조제6항과 같이 별도의 항을 신설하는 대신 이를 기존 용자규정인 동법 제7조제5항과 통합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필수농자재의 가격상승으로 인하여 필수농자재 구입에 어려움을 겪는 농업경영체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수농자재 구입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고 수정하는 것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 유사 입법례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4조(자금지원)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u>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u> 산림사업에 대하여 그 <u>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용자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u>
「농업생산기반시설 및 주변지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제26조(비용의 부담)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u>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u>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시행자에 대하여 기반시설의 설치 등 농업생산기반시설등활용사업의 시행에 사용되는 <u>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용자할 수 있다.</u>
「노후거점산업단지의 활력증진 및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법」
제22조(자금지원 등)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경쟁력강화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u>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u> 제18조제3항 각 호에 대하여 그 <u>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용자할 수 있다.</u>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제26조(보조 또는 용자)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자가 시행하는 스마트도시건설사업 등 비용의 일부를 <u>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u> 보조하거나 용자할 수 있다.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제47조(보조·용자) ① 정부는 분산에너지 개발 및 보급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u>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u> 분산에너지사업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u>비용을 보조 또는 용자할 수 있다.</u>

한편, 개정안에 대해서는 「국회법」 제79조의2제1항에 따라 비용추계요구서가 제출된 상태로, 재정소요와 관련하여 국회예산정책처의 비용추계서가 첨부될 예정임(추후 관련 내용 보완 예정).²⁾

2) 국회예산정책처는 의원 또는 위원회가 요구한 비용추계에 대하여, 법안의 내용에 따라 ①비용추계서, ②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③비용추계 미대상 사유서로 구분하여 작성·회답함. 비용추계서는 재정이 수반되고 소요 비용의 추계가 가능한 법안, 미첨부 사유서는 재정이 수반되기는 하지만 기술적으로 비용추계가 어려운 법안, 미대상 사유서는 시행되더라도 재정이 수반되지 않거나 재정부담에 변화가 없는 법안에 대하여 작성됨(국회예산정책처, 법안비용추계 이해와 실제, 2024, p. 29).